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미영 의원 발의】



2020. 5.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1호로 2020년 4월 1일 박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안 제3조 ~ 제4조)

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5조 ~ 제6조)

다. 환수조치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0. 3. 6. ~ 3. 10.)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 나.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 다. 안 제7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현행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 100만원 (국비 50%, 시비 50%) => 보건복지부 사업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100만원(시비 100%) => 서울특별시 사업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 지원 없음

참 고 자 료

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